

모바일로 송달문서 열람, 집에서 영상재판 받고...



- 이르면 2024년부터...차세대 전자소송 청사진을 보면

이르면 2024년부터 모바일로 판결문을 검색하고 송달문서를 받아볼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재판을 받는 등 사법절차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3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노태약),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아람(42·사법연수원 33기)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추진단장은 이날 '전자소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하며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이 가져올 변화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차세대 전자소송은 1차년도 분석 단계를 지나 현재 2차년도 설계 단계에 있는데, 3차년도 개발 단계와 4차년도 테스트·전환을 거쳐 2024년 오픈할 계획이다.

1. 소 제기前 유사사건 판결문 검색, 소송절차 안내 받아

유 단장은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이 마무리 되면 △사법정보 공개포털에서 소 제기 전 본인 상황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고 △인공지능 챗봇과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24시간 소송절차를 안내 받으며 △사법정보 공유센터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법원 방문이나 서류 출력 없이 소장을 접수해 △모바일 앱으로 송달 문서를 열람하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법정에 접속해 재판을 받으며 △사법통합민원포털에서 현재 진행 상태와 다음 재판 일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법원 업무적인 관점에서 △분할화면 기록 뷰어를 제공해 기록을 볼 때 편의성을 높이고 △원·피고 측에 준비서면 양식을 제공해 검토·비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준비서면 중복 부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부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절차별로 누락방지 모니터링을 설정해 업무 정확성을 강화하고 △소장 접수 때 흠결여부를 자동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재판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2. 법원에 가지 않고 소장 제출, 다음 재판일자도 확인

그는 추가적인 전자소송 발전을 위해서는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보조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는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유 단장은 “민사사건 등 대부분의 소송절차에서 전자소송이 구현되었지만 형사절차는 종이로 진행되는 만큼 형사전자소송을 추진해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전자소송은 종이기록을 그대로 전자기록으로 변환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더이상 종이소송의 틀에 가두지 않고 전자소송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소송업무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장기적으로 소송업무 보조도구로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포지엄에서 전후재(47·2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민사전자소송의 성장과 전망-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3. 형사전자소송 도입, 신기술 활용 업무 보조 강화해야

전 교수는 “2010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한국에서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입법화되었는데, 법 부칙 제1항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단계적 구현을 상정해 ‘법을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민사집행·도산·비송사건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서 “5년의 기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의 조문으로 급히 만든 특별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춰 설계된 민사소

송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 전자소송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때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현실이 된 원격영상 가상재판을 적용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사건은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며 △앞으로 인공지능의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을 가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법률신문)